

정 액 영 수 증

(앞 면)

← 250 mm →				↓
NO. _____		정액영수증원부		▲ 5mm
금 액	금 원정(W)			▲
발 행 연월일				↓
기 부 자	성 명			90mm
	생년월일			
	주 소			
	직 업			
	전화번호			
← 100mm →		취 급 자 인	NO. _____	
			정액영수증	
			금 원정(W)	
			위의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	
			년 월 일	
			기부자 성명 :	
			주소 :	
			중앙선거관리위원회	
			제작	
			5mm	
			←	

(뒷 면)

- 주 1. 회계책임자는 금액, 발행연월일, 기부자의
성명·생년월일·주소·직업 및 전화번호
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.
2. "취급자인"란에는 회계책임자 인장으로 날
인을 하고 교부하여야 합니다.

*이 영수증은 「정치자금법」 제17조에 따라 중앙선
거관리위원회(사업자등록번호 : 138-83-01632)가 제
작하고, 후원회가 발행한 것입니다.

*이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에 대하여는 「조세특례제
한법」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만원까지는 그 금액의
110분의 100을,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
해당 금액의 100분의 15(해당 금액이 3천만원을 초
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)에
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,
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에 따라 그 공제금액의 100분
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
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
다(「정치자금법」 제59조).

*정치자금영수증의 발급·발행·교부 등에 관계하는
자가 법률에 의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
영수증의 일련번호를 공개 또는 이를 다른 국가기관
에 고지하거나 정치자금영수증을 허위로 작성하여
교부하거나 위조·변조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처벌을 받
습니다.